

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

충북도 내 시설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『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』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0일

충청북도지사
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
- (사업명)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
- (지원대상)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업체 50개소
- (제외대상) 지원제외업종 별첨사업장, 국세·지방세 체납사업장, 프랜차이즈 직영점, 20~22년도 시·군 유사사업 참여자, '23년 이후 창업자
- (지원내용) 공급가액 기준 80%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(1인당 2백만원 내)
- (접수기간) 2023년 2월 10일(금) ~ 4월 7일(금)18:00까지
-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접수
- (지원절차)



□ 세부지원내용

- (지원대상)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50명
- (제외대상) 지원제외업종 별첨사업장, 국세·지방세 체납사업장, 프랜차이즈 직영점, 20~22년도 시·군 유사사업 참여자, '23년 이후 창업자
- (지원분야)

연번	지원항목	세부 지원내용	한도
1	옥외광고물	LED간판, 채널간판, 돌출간판	1인당 2백만원 한도 (공급가액)
2	인테리어	내부인테리어, 진열대, 어닝, 샷시	
3	CCTV	CCTV기기·프로그램 구매	
4	POS 및 키오스크	POS 및 키오스크 기기·프로그램 구매	

※ 지원항목은 신청한 사업체(사업자등록증상 주소)내에 설치한 경우만 인정

○ (세부내용)

- 신청 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자 1명당 1개의 사업체에 한 해 지원 가능(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)
- 신청자 1인당 1개 지원항목만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 사업계획 및 항목 변경 불가
- 공급가액의 80% 지원(부가세 및 한도 초과금액 등 소상공인 부담)
-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계약·지출건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
-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지원금지급신청서·완료보고서 제출 必
- 신청서상 점포환경개선 前 사진 첨부 必
- 신청 전 공급업체(시공업체) 사업자등록증상 지원항목 관련 업종·품목 기재 확인 必

(예시1) 간판비용이 220만원(공급가 200만원+부가세 20만원)인 경우
→ 지원금산정: 공급가(200만원)의 80%이내: 160만원 지원

(예시2) 간판비용이 275만원(공급가 250만원+부가세 25만원)인 경우
→ 지원금산정: 공급가(250만원)의 80%이내: 200만원 지원

(예시3) 간판비용이 330만원(공급가 300만원+부가세30만원)인 경우
→ 지원금산정:공급가(300만원)의 80%이내: 200만원 지원(한도금액적용)

○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환수

- 선정통지 이후 소상공인이 충북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- 선정통지 이후 사업장을 폐업 및 휴업한 경우
- 신청서류 허위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
- 사업진행에 필요한 요구·협조 등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
- 20~22년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
- 해당 사업 선정 이후 동일 과제로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
- 그 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○ (1차) 사업기간, 22년도 매출액, 가점 확인 등 정량평가(60점)

- 사업목표의 1.5배(75명) 선발, 점포환경개선 前 사진 확인 등
- 동점자 발생시 전원 2차 평가 응시자격 부여

구분	항목 및 배점	세부 심사평가 항목				
		1차 정량평가 (50점)	사업기간* (30점)	10년 이상 30	8년 이상~ 10년 미만 25	6년 이상~ 8년 미만 20
	22년도 매출액* (20점)	5천만원 미만 20	5천만원 이상~ 1억원미만 17	1억원 이상~ 1억5천만원 미만 14	1억5천만원이상 ~ 2억원 미만 11	2억원 이상 8

구분	배점	세부 심사평가 항목
최대가점 (10점)	모범음식점(3점)	- 지정서 확인 3점
	교육 및 컨설팅*(2점)	- 교육 및 컨설팅 참여이력 확인 2점
	백년가게(5점)	- 백년가게 확인서 확인 5점
	대표취약계층(10점)	- 저소득자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: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- 한부모가정: 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발급) - 만65세이상자: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기준)

※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 항목 0점 부여 /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

※ 가점: 각 해당 항목 합산하여 최대 10점까지 부여

※ 22년 중 창업자의 경우, 연 매출로 환산하여 측정

예시) 2022년 7월 1일에 창업하여, 2022.07.01.~12.31.까지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
→ 22년 매출액 1억원으로 환산하여 평가

* 21~23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 경영개선·창업교육 또는 성공경영맞춤형 컨설팅 참여자

- (2차) 사업아이템 및 성장가능성, 사업계획 등 정성평가 진행(50점)
 - 외부평가위원 3인 이상 구성하여 서면 평가 진행

구분	항목 및 배점	세부 심사평가 항목
2차 정성평가 (50점)	사업아이템 및 성장가능성 (30)	- 사업아이템의 참심성 및 독창성 - 점포환경개선을 통한 성장가능성 - 파급효과
	사업계획 (20)	-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성 - 점포환경 개선 의지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- 전문성(기술력, 동업종 경력 등)

- 선정 절차
 - 1 ~ 2차 평가점수 및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50명 선정
 - 중도포기, 선정취소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자 10명 선정
 - 동점자 발생 시 ① 1차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 ② 2차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 ③ 가점 점수가 높은 신청자 ④ 연장자순으로 선정

□ 유의사항

-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 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함.
-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항목은 신청 불가.
- 신청자는 시공(제작) 외주업체와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, 허위 시공(구매), 수수료 요구 및 지불,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함.
- 점포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간 사업체를 유지해야 하며,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.
- 제작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 통장예세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.
- 공급업체(시공업체)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, 발급이 불가능한 업체는 참여 불가.
- 부정수급 등 선정 취소된 소상공인의 경우 향후 지원 배제되며, 금액과 횡수, 수법 등에 따라 형사고발,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- 해당 사업에 선정된 사업체가 공동대표인 경우, 각각의 공동대표 명의의 사업체로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.

□ 모집일정 및 서류접수

○ (접수기간) 2023년 2월 10일(금) ~ 4월 7일(금)18:00까지

○ (접수방법) 방문 및 우편접수

* 접수처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
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담당자 앞

○ (문의처) 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 사업담당자 (☎ 043-230-9765)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서류	유의사항	비고	
공통	1	신청서	[제1호 서식]	신청자
	2	사업계획서	[제2호 서식]	
	3	사업자등록증	-	
	4	개인정보등 수집 동의서	[제3호 서식]	
	5	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	- 유효기간 내 문서 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(https://sminfo.mss.go.kr)	
	6	사실증명 (총사업자 등록내역)	-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(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발급)	
	7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- 최근 1년(2022.1. ~ 2022.12.) -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(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발급)	
	8	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	-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로 대체 (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발급)	
	9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	-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-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-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장기준 발급	
해당 시	10	모범음식점 지정증	- 기초자치단체 발급분에 한함	공급 업체
	11	백년가게 확인서	-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에 한함	
	12	대표자 취약계층 확인서류	- 저소득자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장애인: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- 한부모가정: 한부모가족 증명서 - 만65세이상자: 주민등록등본(공고일기준)	
공통	1	사업자등록증	- 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보유	공급 업체
	2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	- 거래처 직인, 구체적인 구매물품(품목, 수량, 단가 등) 또는 위탁업무 내역	
해당 시	3	옥외광고업등록증	- 옥외광고물 제작시	

※ 필요 시, 사업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별첨

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‘착한 임대인’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‘20.12.~’21.12.) (3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

표준산업분류	업종
	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) 및 예시

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